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난임시술비 총급여액 요건 적용배제(최기상의원안)	3

I. 개요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난임시술비 총급여액 요건 적용배제(최기상의원안)

현행	최기상의원안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2항)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그 밖의 의료비: 15% ○ 공제한도: - 다음 경우의 의료비 : 한도 없음 (총 의료비지출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 3% 이상 금액 한정) · 거주자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 700만원 (총급여액 3% 이상 금액 한정)	☐ 난임시술비 총급여액 요건 적용배제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 다음 경우의 의료비 :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의료비지출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 3% 이상 금액 한정) · (현행과 같음)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현행과 같음)

* 최기상의원안 2024. 7. 18. 제출(의안번호 1918)

☐ 개정안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중 의료비 지출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난임시술비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규정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30%, 미

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의료비 공제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그 혜택이 적용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난임시술비의 경우 2014년 12월 세법개정으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이 30%로 재차 상향조정된 바 있음¹⁾.

참고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1조 3,634억원 수준이며, 2024년에는 1조 5,107억원, 2024년에는 1조 6,405억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금액	12,675	13,545	11,121	12,088	13,634	15,107	16,40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현행 의료비 특별소득공제 제도는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아닌 총 급여액의 3%인 최저지출기준을 초과한 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1) 참고로 2021년 세법개정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상 난임시술비를 지출하였으나 난임시술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개정안은 난임시술비에 한하여 최저지출기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수준과 무관하게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회원국(37개국) 중 가장 낮으며 향후 현재와 같은 합계출산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총 인구수가 2040년 기준 4,916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및 건전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³⁾.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출산율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둘째, 우리나라의 난임 진단 환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점

2)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함.

3)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2023.11.08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 1,038명 대비 2022년 14만 458명으로 16.0%(연평균 3.8%) 증가하였고,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127만 3,668원에서 2022년 184만 4,354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⁴⁾.

[2018년~2022년 난임시술 진료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평균	'18년 대비 '22년
난임 시술	환자 수	121,038	122,597	129,230	143,142	140,458	3.8	16.0
	진료비 (억원)	1,542	1,738	2,092	2,415	2,591	13.9	68.0
	1인당 진료비 (원)	1,273,668	1,417,552	1,618,655	1,686,951	1,844,354	9.7	44.8

자료: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3.5.25.

셋째,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난임시술을 확대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는 43세 이하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난임 시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영의료시스템(NHS)를 통해 난임시술을 최대 3회까지 100% 지원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3.5.25.

첫째,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통상적 의료비 지출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당해연도 소득의 7.5%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당해연도 소득의 5%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난임시술의 경우 다른 의료비에 비해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이며, 공제한도(연 700만원)도 미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1회당)]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장애인 의료비, 65세 이상 고령자

5)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료비 등 다른 중증의료비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